

완도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

「완도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년 6월 8일

완 도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완도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

2. 발 의 자 : 조 인 호 의원

3. 제정이유

-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완도군 관내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절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신고대상(안 제3조)
- 지급기준 및 지급시기(안 제4조, 안 제5조)
- 지급제외 및 지급신청(안 제6조, 안 제7조)

○ 포상금 환수 및 관련정보 보호(안 제8조, 안 제9조)

5. 조례안 예고기간 : 2023. 6. 8. ~ 2023. 6. 14.

6. 의견제출

-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완도군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이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완도군의회 의회사무과(의정지원팀)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48 / (우) 59121
(전화: 061-550-5933, FAX: 061-550-5907)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 등

7. 기타

-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과 의정지원팀(전화: 061-550-59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2. 완도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안 예고명	완도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완도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의 조례안 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완도군의회의회장 귀하			

완도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완도군 관내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절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라 함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 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대상은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3. 가구구성원의 사망, 사고 또는 자살 시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문제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제4조(지급기준)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고된 가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포상금은 1건당 5만원으로 하되, 동일 제보자에게 연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제5조(지급시기) ① 포상금은 신고된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그 밖에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3.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를 신고한 경우

4.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

제7조(지급신청)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 환수) 군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한다.

제9조(관련정보 보호) 위기가구 발굴에 협력한 사람은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포상금 지급신청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포상금 지급 결정 후 1개월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신고대상 자 및 위기상황	신고대상자:		
	※ 성명을 모를 경우 상세주소 기재		
	신고대상자 상세주소:		
	위기상황:		
	※ 상세하게 기재(예: 실직, 결식, 월세, 공과금 연체 등)		
포상금액	건당 5만원		
	※ 동일 신고인이 연간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을 수 없음.		
수령 계좌번호			

「완도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 도 군 수 귀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위기가구의 발굴) ① 보장기관의 장은 누락된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가구(이하 이 조에서 “위기가구”라 한다)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공유받은 정보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결과 보장기관의 장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

2. 자살자가 발생한 가구 또는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